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85 발의연월일: 2025. 2. 24.

발 의 자:이학영·김교흥·정준호

문금주 • 문정복 • 이정문

안호영 · 강득구 · 임호선

김성환 · 김영배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,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무거운 데 반해 가석방 등 형의 감경으로 과 소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내란 또는 외환, 반란의 죄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,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본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과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의

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(안 제7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과 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 제2편제1 장에서 정하는 반란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가석방의 요건) ① 징역이	제72조(가석방의 요건) ①
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	
람이 행상(行狀)이 양호하여 뉘	
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	
은 20년, 유기형은 형기의 3분	
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	
가석방을 할 수 있다. <u>&lt;단서</u>	
<u>신설&gt;</u>	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과 외
	환의 죄, 「군형법」 제2편제1
	장에서 정하는 반란의 죄를 범
	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	<u> 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